

2005. 2.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 2. 7	2005. 2.14	2005. 2.19	2005. 2.19	총무과장
충주시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	"	"	지적민원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면 명칭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행정자치부 제2004-2호)을 받음에 따라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변경하여 지명의 혼돈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사항을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 제1조)
- 충주시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변경(안 별표2)

나.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감담당공무원이 보험에 가입하여 인감사고에 대비하듯, 주민 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보험에 가입(안 제3조제1항)
-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은 최저 5천만 원 이상으로 함(안 제3조제2항)
-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시 초과액은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재 사용중인 상모면의 행정구역명은 행정적으로만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상모면보다는 수안보라는 명칭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음.
- 따라서, 별개의 지명으로 인식하거나 혼돈되어 사용되는 등 불편을 겪어오던 것을 실제 통용하고 있는 지명과 행정구역명을 일치 시킴으로써 지명 혼돈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한층 더 부각시켜 수안보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행정구역명 변경을 위하여 상모면 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총 1,441세대 중 1,344세대가 명칭변경에 찬성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2004년 12월 24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임.
- 또한, 명칭변경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할 각종 도로표지, 공공기관·단체 등의 명칭이 이미 대부분 수안보로 되어있어 행정구역명 변경에 따른 혼란과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임.

나.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를 근거로 지난 2003년도 제77회 임시회에서 의결, 제정된 조례로 조례의 주 내용은 인감사고로 인한 시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인감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담당공무원의 변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현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인감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업무로 인한 사고로 재정적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법 제20조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주민등록업무담당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의 주된 내용이나 조례 제명이 바뀜으로써 전부개정조례로 제출되었음.
- 제출된 개정조례안 대로 개정할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수는 전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중에서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면 직원을 제외한 13명(동 직원)이며 이로 인해 연간 시에서 납부할 보험료 총액은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 약 53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됨.

- 참고로 보험가입금액(1인당 1회 청구 보상한도)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일반적인 업무배상공제보험의 기본 가입금액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이미 동 조례가 제정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최저 보험가입금을 1억원이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임.

※ 도내 조례제정 자치단체의 경우

- 진천군, 괴산군 : 1억원이상
- 청주시, 증평군 : 5천만원이상

- 최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발급 받아 신용카드 발급, 예금인출 등의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유사한 사고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도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읍·면이 추가되는데 주덕읍설치조례와 상관관계는 없는지?

- 답변 : 구역에 관한 조례이므로 관계없음.

나.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질의 : 대직자도 보험가입을 해 주는가?

- 답변 : 예

▶ 질의 : 대직자를 별도로 지정해줄 필요가 있는가?

- 답변 :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대직자를 지정해 주어야 함.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나.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 임

- 가.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나.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